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82
------------	-------

제출년월일: 2023. 5. .

제 출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징물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요건을 정비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 신설

-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범위(5급→6급) 확대
-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신설)하여 위원회 관리 효율성 도모
-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사유 구체적 명시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나.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3. 4. 6. ~ 4. 26.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3)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 결과 : 원안동의
-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안 통보 및 수용
※ 제8조제2항 “구청장”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으로 개선
- 5) 제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2023. 5.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홍보 · 디자인 · 브랜드 등의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6급 이상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 · 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구성) ① (생 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의 행정 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구청장</u>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p> <p>1. <u>홍보 · 디자인 · 브랜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u></p> <p>2. (생 략)</p> <p>3. <u>브랜드 · 마케팅 · 홍보 · 디자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u><신 설></u></p>	<p>제8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u>-----.</p> <p>1. <u>홍보 · 디자인 · 브랜드 등의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6급 이상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u></p> <p>2.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 · 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p> <p><u><삭 제></u></p>
<p>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10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p> <p>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p>
<p>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p>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삭 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이 름	행정지원국 홍보미디어과 이정은
연락처	02-3153-8265